

	<h1>학생상벌 규정</h1>	문서번호	MSU-
		제정일자	2014. 2. 6.
		최종개정일자	
		담당부서	교무입학처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목포과학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학칙 제43조 및 제44조에 의거하여 학생을 포상하거나 징계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생포상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의결
2. 학생징계에 관한 사항의 심의 · 의결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학생상벌심의위원회 구성) ① 학생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는 학생상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학사지원처장, 기획처장, 교무입학처장, 산학취업처장의 당연직 위원과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교무입학처장이 되며, 간사는 학생과장이 된다.

제4조(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제5조(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6조(보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않는 사항은 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제 2 장 포 상

제7조(학생포상의 종류) 학생포상의 종류는 최우수상, 우수상, 공로상, 모범상, 노력상 및 특별상으로 하고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외의 포상도 할 수 있다.

제8조(포상의 대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1. 최우수상은 재학 2, 3, 4년간의 학업성적이 최우수한 자에게 수여하며 선발원칙은 학과별 최우수 학생 중에서 윤번순위로 선발하고 그 순위는 학칙 제4조에 따른다.
2. 우수상은 재학 2, 3, 4년간 학업성적이 학과별 최우수한 자에게 수여한다.
3. 공로상은 학생으로서 제반 본분을 다하고 대학발전 및 학생의 활동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수여한다.

4. 모범상은 봉사활동과 선행을 하여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된 자에게 수여한다.
5. 노력상은 재학 2, 3, 4년간에 등록을 필한 공인자격증을 2개 이상 취득한 자에게 수여한다.
6. 특별상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한 자로서 외부의 시상 요청이 있을 때는 특별상을 시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의 발의) 제8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교학처장은 다음 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상정하여 포상을 발의한다.

1. 지도교수 추천서 또는 관계교직원의 추천서 1부
2. 학과장 추천서 1부

제10조(포상심의 절차) ① 교무입학처장은 포상대상자의 추천구비서류를 갖추어 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총장이 시행한다.

제3장 징 계

제11조(징계의 구분) 학칙 제44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구분하여 근신은 10일 이내, 유기정학은 1개월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징계의 대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 대학 설립정신에 위배되며 학교명예를 훼손한 학생
2. 집회 허가 없이 일체의 집단적 행위를 주도하거나 동조한 학생
3. 학생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한 학생(교내음주 · 폭행 · 교구파손 등)
4. 총장의 경고 · 금지사항을 위반한 학생
5. 기타 학칙 및 제 규정을 위반한 학생

제13조(발의 및 심의절차) ① 학생의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총장의 재가를 받아 위원회에 징계안을 회부한다.

② 교무입학처장은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위원회에 통보한다.

1. 사건경위서 1부
2. 본인의 진술서(본인 거부 시 생략할 수 있음) 1부
3.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의 의견서 1부

③ 위원회는 징계안이 회부되는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처리한다.

④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지도교수 또는 관계 교직원의 출석을 요청하여 해명 또는 참고발언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징계당사자의 소청이 있을 시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 발효한다.

제14조(특별지도 및 권리정지) ① 퇴학 이외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징계기간 중 담당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지속적인 특별지도를 받아야 한다.

② 근신처분을 받은 학생은 수업이외의 모든 학생활동의 참여가 금지된다.

③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을 받은 학생은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며, 수업을 받을 수 없다.

④퇴학 이외의 징계기간 중 다시 학칙을 위반하거나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퇴학 처분 할 수 있다.

제15조(징계의 해제) ①근신과 유기정학은 기간이 만료되면 특별한 절차 없이 해제된다. 단, 총장은 징계기간 중 품행을 참작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무기정학의 해제는 지도교수 및 학과장으로부터 학생에 대한 지도결과보고서와 징계해제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되면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징계를 해제할 수 있다.

제16조(통보) ①징계사실은 관계부서 및 학부모·본인 등에게 통보한다.

②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징계의 종류 및 사유를 학적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1. 본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지도 위원회의 건의에 의하여 총장이 정한다.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